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영 주 시

영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01
----------	-----

제출년월일 : 2000. 1.
제출자 : 영주시장

1. 제정이유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 오염 및 경관훼손이 없는 시설 및 지역등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숙박업·관광숙박업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 되었던 식품접객업·숙박업·관광숙박업 등의 설치가능 시설 및 지역 지정(안 제3조)

- 1) 하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
- 2)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의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호소경계로부터 100m이상인 지역
- 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이 아닌 지역
- 4)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
- 5)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이 갖추어진 시설, 단,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km이내 지역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에 한함.

- 6)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시도 경계로부터 30m이상인 지역.
다만, 제2조제1호의 식품집객업은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시도 경계로부터 10m이상인 지역
- 7) 온천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외의 지역.

나. 거리환산은 지역, 지구, 구역의 경계로부터 부지내 건축되는 모든 건축물의 최외곽부분까지 최단의 직선거리를 적용함 (안 제4조)

다.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등을 고려하여 숙박업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영주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숙박업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참고자료 : 덧붙임

- 가. 전교부 조례예시(안) 사본 1부
- 나. 관련법령(발췌) 1부
- 다. 타 시군 조례비교표 1부
- 라. 입법예고결과 1부.

영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등 준농림지역내 식품집객업·숙박업·관광숙박업(이하 "숙박업등"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집객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숙박업등의 설치가능지역 등)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업등의 설치가 가능한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하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국가하천·지방 1급하천·지방 2급하천)구역경계로부터 100m이상인 지역
2. 호수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의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호수경계로부터 100m이상인 지역
3. 환경영재기본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이 아닌 지역
4.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0m이상인 지역
5.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

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이 갖추어진 시설, 단, 수도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km 이내 지역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에 한함.

6.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시도 경계로부터 30m이상인 지역. 다만, 제2조제1호의 식품접객업은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시도 경계로부터 10m이상인 지역
7. 온천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외의 지역.

제4조(거리의 환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가능지역의 거리환산은 지역·지구·구역의 경계로부터 부지내 건축되는 모든 건축물의 최외곽부분까지 최단의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제5조(숙박업등의 설치제한 특례)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등을 고려하여 숙박업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영주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준농림지역내 숙박업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인·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인·허가된 것으로 본다.

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

(건교부예시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등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이하 "숙박업 등"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숙박업등의 설치가능지역등)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업등의 설치가 가능한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하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및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의 상류로부터 유·하거리가 일정이상인 지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3.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동법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단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Km이내 지역의 경 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에 한함.
4.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지역
5.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안에서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한하는 높이 미만의 시설

제4조 (숙박업등의 설치제한 특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농림지역내 숙박업등의 설치를 제한 할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인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하여 인허가된 것으로 본다.

관련 법령 (발췌)

1.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1항제4호)
2.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3.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7. 하천법 (제2조 및 제10조제1항)
8.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
9.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
10. 수도법 (제3조제15호 및 제5조제1항)
11. 하수도법 (제2조제5호)
1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13. 온천법 (제3조제1항)

1.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 제한) ①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3. <생략>

4. 준농림지역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규모 이상인 공장·건축물·공작물 기타의 시설의 설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농업진흥이나 농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지법에 의하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법에 의한 행위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5. <생략>

② ~ ③ <생략>

2.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 제한)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② <생략>

3.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 2. <생략>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7. <생략>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주로 달리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달리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난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홍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홍종사자를 두거나 유·홍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8 <생략>

② <생략>

6.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 7. <생략>

② <생략>

7. 하천법

제2조(용어의 정의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이하 “수계”라 한다)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구역을 말한다.
 - 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내홍수 기타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
 -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 다. 제방(하천의 관리청이나 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수축의 토지를 말한다)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외지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중 가목에 해당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
3. “하천부속물”이라 함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관측시설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관리청외의 자가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하여는 관리청이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자의 동의를 얻는 것에 한한다.
4.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유수로 인하여 생기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하천의 신설·개축 또는 보수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② 하천은 이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하천 :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2. 지방1급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하천
3. 지방2급하천 :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에 유입하거나 이에서 분기되는 수류로서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에 준하여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제10조(연안구역) ① 관리청은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보전하고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부속물 손상, 하천에의 토사유입이나 홍수범람 우려가 있는 하천에 인접된 일정한 구역(이하 "연안구역"이라 한다)을 연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8.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소"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댐의 경우에는 계획 홍수위를 말한다) 구역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
 - 가. 댐·보 또는 제방(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시설을 제외한다)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개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 나.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 다. 화산활동등으로 인하여 험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2~3 <생략>

9.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의 오염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당해 지역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10.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4. <생략>

15. "수도시설"이라 함은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 급수장치 기타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6. ~ 24. <생략>

제5조 (상수원보호구역지정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⑤ <생략>

11.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치료하여 하천·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생략>

1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오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중에 있거나 설치예정인 지역에서 오수를 동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동시설로의 유입·처리시점이 건물 기타 시설물의 준공예정시점이 전인 경우에 한한다)

2.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④ <생략>

13. 온천법

제3조(온천지구의 지정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지구로 지정하거나 온천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④ <생략>

준농립지 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 관한조례(안) 타시·군 비교표(안) 제3조

한글부제시(안)	영주시(안)	상주시	영화군	예천군	청도군	고령군	영덕군
제1조(숙박업등의 설치 가능지역 등) 1. 청진면 제2조 제1항 및 10호 기념성어관 체육센터 500m 부터 유숙거리가 일정 이상인 인 지역	제3조(1) 1. 하남(국가하천), 지방(급수원, 차별교류처), 국적 경계로부터 100m이상 인 지역	하남(국가하천), 지방(급수원, 차별교류처), 국적 경계로부터 100m이상 인 지역	국립공원, 천구역 등으로 부터 100m이상인 지역	유숙거리가 100m이상인 지역	유숙거리가 100m이상인 지역	유숙거리가 100m이상인 지역	100m이상인 지역
1-1. 호수·천연수·지하수·호수· 천·수·지하수·호수로부터 유숙거리가 일정 이상인 지역	2. 호수의 상류로부터 유숙거리가 호수 경계 로부터 500m이상인 지역	호수의 상류로부터 유숙거리가 호수 경계 로부터 500m이상인 지역	유숙거리가 100m이상인 지역	유숙거리가 100m이상인 지역	유숙거리가 100m 이상인 지역	유숙거리가 100m 이상인 지역	100m 이상인 지역
2. 환경부가법 제22조의 규정 에 의한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이 아닌 지역	3.						
2-1. 수도꼭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4. 설수원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상인 지역	설수원구역 경계로부터 (예시안과 함께)	설수원으로부터 상 류방향으로 유숙거 리 2km이상인 지역	설수원과 함께 (예시안과 함께)	설수원과 함께 (예시안과 함께)	설수원과 함께 (예시안과 함께)	(예시안과 함께)
3. 해수도법 제2조 제6호, 규정에 의한 해수증발처리시설이 설치, 운영 되는 지역이나, 오수·분뇨 및 수산재수거 처리시설설립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장 또는 도립대학원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설립장소가 갖추어진 시설 단, 수도꼭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수원 유수장으로부터 500m 방향으로 500m 이내 지역의 경우에 는 해수증발처리시설이 설치 운영 되는 지역이나 설치 운영	5. 제3조 제15 호의 규제에 의한 상수원 허수장을 부터 상류방향으로 5km이상인 지역 (단, 해수증발처리 장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은 제외)	수도법 제3조 제15 호의 규제에 의한 상수원 허수장을 부터 상류방향으로 5km이상인 지역 (단, 해수증발처리 장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은 제외)	상류방향으로 5km(운용량 5㏊/내 "전구역" 포함)이내 지역의 경우에는 현수·증발처리 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 에 한함.	상류방향으로 5km(운용량 5㏊/내 "전구역" 포함)이내 지역의 경우에는 현수·증발처리 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 에 한함.	상류방향으로 5km(운용량 5㏊/내 "전구역" 포함)이내 지역의 경우에는 현수·증발처리 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 에 한함.	(예시안과 함께)	(예시안과 함께)

준농림지역내수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터시·군 비교표(안 제3조)

전교부예식(안)	영구식(안)	상주시	봉화군	예천군	청도군	고성군	경상군
1. 코도·지방도·시도·군도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면허전지역	6. 고속도로·방한국도· 지방도·시도 경계로부터 30m이상인 지역 다만, 제2조제1호의 식품 설립점은 일반 도·시도 경계로부터 10m이상인 지역	고속국도·방한국도 ·지방도·시도·군 도 경계로부터 30m 이상인 지역 다만, 제2조제1호의 식품 설립점은 일반 도·지방도·시도 ·군도 경계로부터 10m이상인 지역	국도·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20m이상인 지역	국도·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20m이상 떨어진 지역	국도·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20m이상 떨어진 지역 거리가 5m를 초과하는 기역(군도 미개량구간 의 경우에는 도로 중심 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2.5m를 초과하는 지역)	국도·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20m이상 떨어진 지역 거리가 5m를 초과하는 기역(군도 미개량구간 의 경우에는 도로 중심 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2.5m를 초과하는 지역)	국도·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20m이상 떨어진 지역
5. 고속도로·방한국도·방한국도 [호]의 규제에 의하여 차단 설정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기 능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안내는 시장이 계획 하는 도로·비단도로·나들	<개정> ※ '91. 4. 30 해상규정이 선정개정됨.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7조제1항 제14호 규정과 영역군 전속조례 및 지연경관 이나 도시경관의 보호 가 특별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기정 시설반을 설치할 수 있다.	전국법 제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6항 제1호의 규정 및 동법 제7조제1항 제14호 규정과 영역군 전속조례 및 지연경관 이나 도시경관의 보호 가 특별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기정 (제시인과 같음) 공고한 지역안내서 제한하는 용역 및 높이미만의 시설	전국법 제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6항 제1호의 규정 및 동법 제7조제1항 제14호 규정과 영역군 전속조례 및 지연경관 이나 도시경관의 보호 가 특별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기정 (제시인과 같음) 공고한 지역안내서 제한하는 용역 및 높이미만의 시설	

제5조(안) 교표·군사·타시·군정·민족·언어·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입법예고결과

- 조례명 : 영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 예고방법 : 영주시보 제209호(1999.12.9)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
- 예고기간 : 1999. 12. 9 ~ 1999. 12. 31(20일간)
- 의견제출여부 : 없음